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6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2조2 (존속기한) 명시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9. 13. ~ 10. 4. (제출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권고사항 없음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 7. (생 략)</p> <p>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p> <p>9. ~ 14. (생 략)</p> <p>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조(세입)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p> <p>9. ~ 14. (현행과 같음)</p> <p>제7조(준용) -- 조례에서 ----- ----- ----- 따른 다.</p> <p>제8조(시행규칙) ----- - 필요----- -----.</p>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김흥순
연 락 처	02-3153-9652